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71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문금주・김문수・권칠승

이학영 · 한민수 · 문정복

황정아 • 주철현 • 안도걸

이정문 · 신영대 · 서삼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 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, 현행법 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.

특히, 현재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는 202 3년 기준 농가인구가 13,66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가인 구가 가장 적어,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 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,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「상호저축은행법」이나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을 참고할 때,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억하려는 것임(안 제11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4조제1항 중 "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,"를 "중 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, 필요한 경우"로 하 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4조(사무소와 구역) ① 중앙	제114조(사무소와 구역) ① <u>중앙</u>
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	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
소를 두고, 정관으로 정하는 기	<u>정관으로 정하고, 필요한 경우</u> -
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	
둘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주
	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
	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
	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.